

# 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24. 2



1. 배출부과금 개요 .....	1
2. 배출부과금 산정 .....	6
3.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	21
4.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	26

## [부록]

<input type="checkbox"/>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	34
<input type="checkbox"/> 질의 회신 사례 .....	52
<input type="checkbox"/>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70
<input type="checkbox"/> 수질배출부과금 재산조사 사례 .....	95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 보고(양식_참조) .....	99

## 제1장 배출부과금 개요

### 1. 부과금제도의 유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과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 중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 가.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물질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에 도입,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본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저감·관리를 위한 제도로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

기본부과금은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부과기간 중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하고,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나.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 기준의 준수(개선명령의 실효성 등)를 확보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도에 도입, ‘8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19종이다.

초과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종별) 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은 위반 시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400 만원의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별 단위량(1kg 등)당 부과금액과 누진·계수적 성격의 각종 부과 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연도별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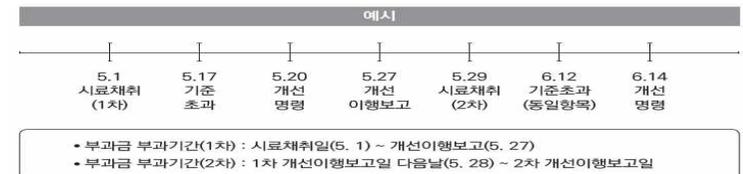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은 500만원

처리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적발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행정처분 이행 완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 등)까지,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 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당초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그 개선이행 보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결과, 동일 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차 개선 부과기간은 개선이행보고일 다음 날부터 2차 개선이행 보고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의 제2호가목9)의 규정에 따라 위반횟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 '81.12.31 「환경보전법」 개정 시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 '83.09.01 배출부과금제도 시행
  - 12종 : 유기물질, 부유물질, 구리, 크롬,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 '87.06.04 배출부과금제도 강화
  - 부과기간의 기산일을 개선명령일에서 시료 채취일로 변경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신설
- '91.01.28 기본부과금(現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제도 신설 등
  - 기본(종별)부과금 도입 : 400만원 ~ 50만원(1종 ~ 5종)
- '91.06.28 폐놀 오염사태와 관련 배출부과금제도 강화
  -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1.0 ~ 4.5 → 3.0 ~ 7.0)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05 → 1.3)
  - 부과대상 오염물질 3개 항목 추가(12종 → 15종)
    - 폐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92.12.08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시행'93.06.09)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증가산금)을 준용
- '93.06.09 자진 개선 신고에 따른 감면 확대 및 계수 강화
  - 자진개선 신고 시 기본부과금(現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적용까지 면제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
    - 단일계수(1.3) → 1종(1.5) ~ 5종(1.1)
- '94.11.11 공동방지시설과 관련된 부과금의 납부방법 변경
  - 사업자 공동부담에서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 분담 부담
- '95.01.01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
- '95.12.29 기본부과금 제도 도입 및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2종 신설, '97.01.01 시행)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2개 항목 추가(15종 → 17종)
    -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98.01.01 시행)

- '00.08.05 부과계수 신설·강화 및 기본부과금 감면 적용 대상 확대
  - 초과부과금 : 1종 사업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5 → 1.5 ~ 1.8(4단계) 확대)
  - 기본부과금 : 사업장별 부과계수를 신설(1.1 ~ 1.8, 8단계)하고, 폐수 재이용율에 상응하는 감면제 도입 (10 ~ 80%까지 감면)
- '03.01.01 초과부과금 대상항목 확대(17종 → 19종, 총질소·총인 추가)
  -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 포함('03.01.01부터 시행)
  - 다만,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일정 기간 완화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구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L)	
	2005.12.31 까지	2006.1.1 이후
청정	30 이하	30 이하
가	200 이하	60 이하
나	200 이하	60 이하
특례	200 이하	60 이하

<도금시설>

구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L)		
	2005.12.31 까지	2006.1.1 ~ 2007.12.31 까지	2008.1.1. 이후
청정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가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나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특례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 '03.06.05 기본부과금 폐수 재이용율별 감면률 조정(8단계→4단계)

재이용율	감면률
10~30%	100분의 20
30~60%	100분의 50
60~90%	100분의 80
90%이상	100분의 90

- '04.02.09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기본부과금 면제
- '06.11.28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확정배출량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정
- '10.02.18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부담 경감 및 부착 확대 유도
  -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부과 시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 등을 제외하도록 함
- '10.06.22 부과금 조정신청 기간, 징수 유예기간 및 분납횟수 연장
  - 조정신청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징수 유예기간 및 분납횟수를 1년 6회에서 2년 12회(최대 3년 18회)로 연장
- '17.01.17 징수기관(지자체)의 징수비용 지급률 상향
  - 징수금액의 10% 일괄 지급에서 징수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10 ~ 20%)
    - ※ (징수비용→지급률) 60% 미만→10% / 60~80% → 15% / 80% 이상→ 20%
- '18.01.16 부과금 납부 수단 확대
  -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19.10.15 기본·초과부과금 항목 변경
  - 유기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고, 총유기탄소량(TOC)에 대한 1kg당 부과금액(450원) 신설
- '19.11.26 중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및 부과요율 경감
  - 가산금에 대한 준용 법률 변경(「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부과방식 : 월(月) 단위 → 일(日) 단위
  - 부과요율 : 1개월당 1천분의 12 → 1일당 10만분의 22
- '21.04.13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납부 독려방안(관허사업 제한 등) 마련
  - 체납액 징수방법 준용 법률 변경(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4.01.01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량·배출농도 산정기준 변경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 →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

##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 1.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은 ①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TOC), 부유물질(SS)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2)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다. 부과대상자

- 1)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 ② 공동방지사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 비율에 따라 부과(「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 2)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라.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text{기본부과금}] = \text{①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times \text{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times \text{③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text{④ 사업장별 부과계수} \times \text{⑤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1)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①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① 유기물질 : 250원/kg(BOD), 450원/kg(TOC)

② 부유물질 : 250원/kg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연도별	2021	2024	2023	2024
부과금 산정지수	5.8282	6.0229	6.4397	6.6451

4) 사업장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9)

사업장 규모 (m3/일)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700이상 2,000미만	200이상 700미만	50이상 200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5) 지역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0)

지역 구분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부과계수	1.5	1

6)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배출농도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까지
부과 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text{※초과율}(\%) = \frac{(\text{배출 농도} - \text{방류수 수질기준})}{(\text{배출허용기준} - \text{방류수 수질기준})} \times 100$$

- 1)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함.
- 2)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 3) 배출농도는 자가측정결과와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되, 자가측정 전체 평균과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각각의 오염도를 더하여 평균함.
- 4)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기초로 검사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함

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1)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아래 자료 제출 요청(전자문서 포함)

- ① 당해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 (확정배출량)
- ②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2)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text{확정배출량(kg)}] = \text{①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times \text{② 부과기간 중 실제 조업일수}$$

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text{일일평균배출량} - (\text{방류수수질기준 농도} \times \text{일일평균유량})$$

-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 함

- 다만, 부과기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frac{(\text{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 + \text{검사결과 통보 받은 일일 오염물질배출량})}{(\text{검사횟수} + 1)}$$

-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함

※(1) 일일유량 = 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분/일)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함

②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text{24시간 평균치-방류수 수질기준}) \times \text{해당 24시간 평균배출유량}$$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의 기준이내 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구분	시기	근거자료
확정 배출량	매 반 기	-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종 료 다음월	-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 결과(검사배출량)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 1)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  
 2) 공동방지시설은 유입사업장 중 5종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외하고 산정  
 3)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은 시 도지사 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음.

- 1)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기관의 검사 시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검사배출량)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산정
  - ① 일일검사배출량 = 검사 시의 배출농도 × 일일유량
  - ② 일일평균 검사배출량 = (일일검사배출량 + 일일검사배출량 + .....) / 검사횟수
  - ③ 검사배출량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 × 조업일수
- 2)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 :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
- 3)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4) 사업자가 제출한 오염물질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오염도 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경우는 2월에 1회 이상하여야 함  
 ①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 5) 오염도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에게 검사 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통보하여야 함

**사. 부과금 감면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시행령 제52조)**

- 1)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함
- 2) 5종 사업장의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음(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
  - ①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 면제
  -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 ③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 ④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간별 감면을 적용

<방류수수질기준 이내 배출기간별 감면률>

방류수수질기준 이내 배출기간	감면률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

⑤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폐수 재이용률별감면률 적용

폐수 재이용률	감면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20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

※ 폐수 재이용률 산정 : 사업자가 제출한 폐수의 발생 처리 재이용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 재이용률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산정

$$\text{재이용률(\%)} = \frac{\text{재이용수량}}{\text{배출시설별 발생(배출)폐수총량}} \times 100$$

3) 감면대상 부과금의 종류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유기물질, 부유물질)

4) 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종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사업장,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 사례>

■ 업체현황

- 사업장 규모 : 2종(배출구 1개소)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나지역(BOD, SS : 120, TOC : 75 mg/L)
- 방류수 수질기준 : BOD, SS : 10 mg/L, TOC : 25 mg/L
- 부과기간 중 조업일수 : 150일

■ 자가측정 결과 (총 6회로 가정)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	평균
배출농도 (mg/L)	BOD	80.0	80.0	90.0	70.0	80.0	70.0	470.0	78.3
	TOC	50.0	60.0	60.0	50.0	50.0	70.0	340.0	56.7
	SS	80.0	90.0	80.0	60.0	70.0	80.0	460.0	76.7
일일유량(m <sup>3</sup> )		1,000.0	1,100.0	900.0	1,000.0	900.0	1,100.0	6,000.0	1,000.0
오염물질 배출량 (kg)	BOD	80.0	88.0	81.0	70.0	72.0	77.0	468.0	78.0
	TOC	50.0	66.0	54.0	50.0	45.0	77.0	342.0	57.0
	SS	80.0	99.0	72.0	60.0	63.0	88.0	462.0	77.0

■ 점검기관의 검사 결과 : 3회 중 2회차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가정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계	평균
배출농도 (mg/L)	BOD	70.0	80.0	60	210.0	70.0
	TOC	70.0	90.0(75.0)*	70	230.0	76.6
	SS	70.0	80.0	80	230.0	76.6
일일유량(m <sup>3</sup> )		1100.0	1000.0	900	3000.0	1000.0
오염물질 배출량 (kg)	BOD	77.00	80.00	54.00	211.0	70.3
	TOC	77.00	75.00	63.00	230.0	76.6
	SS	77.00	80.00	72.00	229.0	76.3

\* 2회차 TOC농도(90 mg/L)는 배출허용기준(75 mg/L)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부과금 산정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적용(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

■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일일평균배출량 : (자가측정평균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점검횟수 + 1)

$$BOD = \frac{(78+77+80+54)}{(3+1)} = 72.25kg/일$$

$$OC = \frac{(57+77+75+63)}{(3+1)} = 68.00kg/일$$

$$SS = \frac{(77+77+80+72)}{(3+1)} = 76.50kg/일$$

■ 일일평균유량

- (자가측정평균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점검횟수 + 1)

$$평균유량 = \frac{(1000+1100+1000+900)}{(3+1)} = 1000m^2/일$$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배출량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평균유량)

- BOD : 72.25 kg - (10 mg/L × 1,000,000 L/일 × 10<sup>-6</sup>) = 62.25 kg/일
- TOC : 68.00 kg - (25 mg/L × 1,000,000 L/일 × 10<sup>-6</sup>) = 43.0 kg/일
- SS : 76.50 kg - (10 mg/L × 1,000,000 L/일 × 10<sup>-6</sup>) = 66.5 kg/일

■ 기준 이내 배출량(확정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조업일수

- BOD : 62.25 kg/일 × 150일 = 9,338 kg
- TOC : 43.0 kg/일 × 150일 = 6,450 kg(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66.5 kg/일 × 150일 = 9,975 kg

2.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은 ①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유기물질(BOD, TOC)	납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부유물질	6가크롬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비스무 및 그 화합물	페놀류	총질소
시아나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총인
유기인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나.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사업장 규모	부과 금액
제1종사업장	400 만원
제2종사업장	300 만원
제3종사업장	200 만원
제4종사업장	100 만원
제5종사업장	50 만원

-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500만원  
 2) 공동방지사설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

다. 부과대상자

- 1)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 ② 공동방지사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 2)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라.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text{초과부과금}] = \text{①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times \text{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times \text{③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text{④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1)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 ②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누출계수를 적용함

2)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수질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된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된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질소		500
총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페놀류		150,000
특정수질 유해물질	시아나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스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3)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기본부과금 적용기준과 같음

4) 지역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지역 구분	청정 및 가지역	나	특례지역
지역별 부과계수	2	1.5	1

5)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총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총인	3.0	4.0	4.5	5.0	5.5	6.0	6.5	7.0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시아나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비스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400%이상을 적용

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별표16)

- ①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 명령·조업정지 명령·허가 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에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함.
- 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함.
- ③ 위반횟수 진행 중에 사업장 종별규모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시마다 종별 구분 계수를 각각 적용 하여 계산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위반의 경우</li> </ul>				
	사업장 규모	2,000m <sup>3</sup> /일 이상 4,000m <sup>3</sup> /일 미만	4,000m <sup>3</sup> /일 이상 7,000m <sup>3</sup> /일 미만	7,000m <sup>3</sup> /일 이상 10,000m <sup>3</sup> /일 미만	10,000m <sup>3</sup> /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함</li> </ul>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위반의 경우 : 1.4</li> <li>•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함</li> </ul>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위반의 경우 : 1.3</li> <li>•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것으로 함</li> </ul>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위반의 경우 : 1.2</li> <li>•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함</li> </ul>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위반의 경우 : 1.1</li> <li>•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것으로 함</li> </ul>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처음 위반의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함

※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3232 판결)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

마.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 1)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 제외)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자진계획서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 시의 폐수의 유량(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함

$$[\text{일일기준초과배출량(kg)}] =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mg/L)} \times 10^{-6} \times \text{일일유량[측정유량(L/분)]} \times \text{일일조업시간[분]}$$

- ※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농도)
-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다섯째자리 절사)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함(둘째자리 절사)
  -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함
  - 4) 일일유량 = 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 측정유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적산유량계 → ②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 → ③물 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및 폐수로 발생되지 않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의 순으로 검토하여 산정
- 2)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에 해당 24시간의 평균 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text{기준초과배출량(kg)}] = (\text{24시간 평균치} - \text{배출허용기준}) \times \text{해당 24시간 평균배출유량}$$

**바. 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 적용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 1)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①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부터 개선 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위탁처리를 하였으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 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부과금 부과기간 : 시료채취일(5. 1) ~ 가동중지일(5. 18)  
 ※ 응급조치(가동중지 등)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 제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 ② 그 밖의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선 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2) 그 밖의 경우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사. 부과금의 감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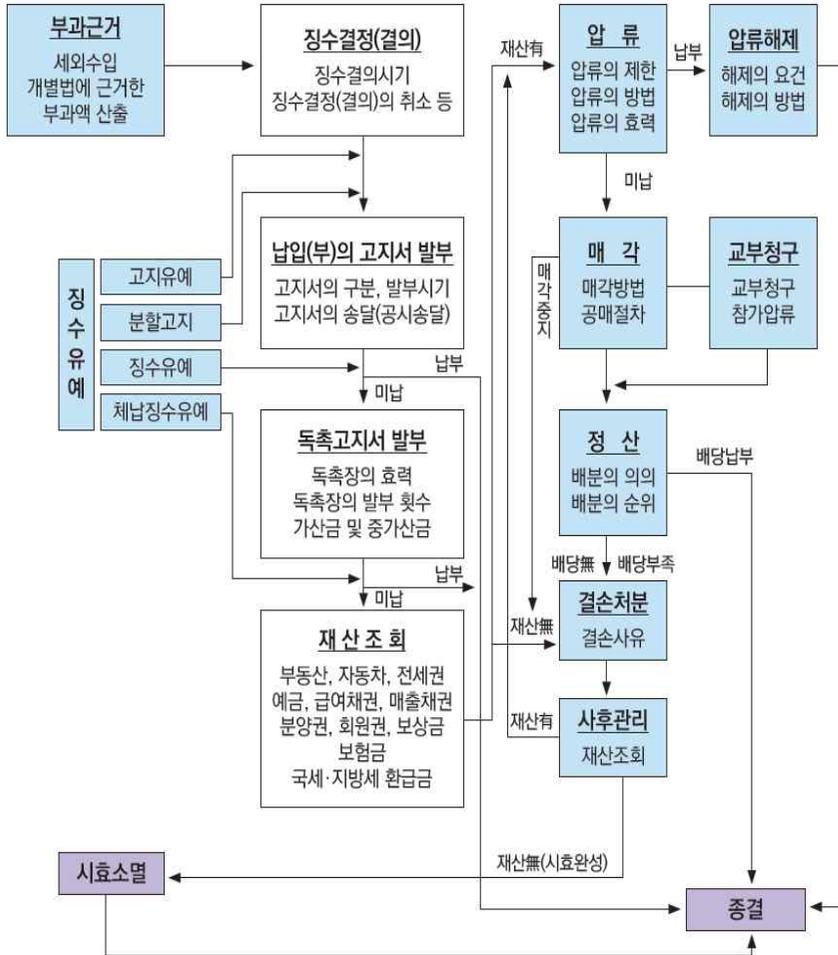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을 더하지 아니함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등 비교>

구분	기본부과금(97~)	초과부과금(83~)
부과대상 오염물질	●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 19종(일반 8종, 특정 11종)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포함
부과대상 시설	●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포함)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포함)
감면 면제 대상	● 5종 사업장 면제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시 면제 ●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배출기간(6개월 ~3년 이상)에 따라 20~50% 감면 ● 재이용률(10~90% 이상)에 따라 20~90% 감면	● 초과율·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미적용 -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시 - 경미한 초과 + 개선명령 미처분 + TMS 설치 사업장
부과 기준	폐수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초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방류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연 2회)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부터 개선완료 시까지
부과금산정방법	● 사업자 제출자료와 관리기관의 수질 검사자료를 기초로 산정	●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 사업자의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부과금산정방식	①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③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 사업장별 부과계수 × ⑤ 지역별 부과계수 × ⑥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①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③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⑦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부과금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 1. 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



<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상세)>(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

#### 2.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행정규칙	-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3.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 가.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1) 기본부과금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 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한 후 개선을 완료한 경우 : 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 ② 개선명령,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 3) 통지서 내용 :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소유권 이전 때에는 즉시 납부통지 할 수 있음

##### 나. 부과금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 1)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절사)
- 2)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 다. 납부기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 1)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 납부기한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라. 납부통지서 반송 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1)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송달하고 수령증을 징구

**마. 독촉장 발급 (「국세징수법」 제10조)**

- 1) 납부의무자가 국세(부과금)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부과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음(납세의무자인 법인명 대신 법인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납세 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는 적법)
-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86 판결)
  - 변상금부과처분에서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위법
- (대법원 1992.11.13. 선고 1992누1285 판결)
  -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
- (서울고법 2011.11.8. 선고 2011누2134 판결)
  -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서명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임

**4. 부과금의 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함
  - ①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개선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완료되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배출기간 산정은 자진개선 사업자는 개선완료보고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까지로 함
    -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개선완료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②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
  - ③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행정기관이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
- 2) 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① 행정기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②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5.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 1) 부과금 납부 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2)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함

- 3)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함
- 4)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또는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5)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납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6) 징수유예의 취소 : 납부 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①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
  -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 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 ②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함

**6. 가산금 (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 제6항, 「국세기본법」 )**

- 1)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2)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구분	부과방법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증가산금	-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22/100,000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
공통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1. 장부관리 및 보고**

- 1)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함(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 2)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연 4회)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 1) 체납액 처리는 체납액 발생일의 익월 중에 하여야 하며,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독촉장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부서에서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 등)</li> <li>•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효력발생, 부과건별로 고지서 발부</li> </ul>
재산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촉기간 내에도 체납금액이 미납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유재산 유무 등 파악</li> <li>• 재산조회는 독촉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독촉 전에도 가능</li> </ul>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경우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li> <li>•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는지 검토</li> <li>• 초과압류 금지, 무익한 압류금지 등 압류제한 검토</li> <li>• 압류통지서 발송 (등기우편 등)</li> </ul>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하여 체납액 충당을 위해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li> <li>• 매각의 방법 : 공매, 수의계약</li> </ul>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 또는 매각처분 등에 의하여 징수한 금전을 체납액과 기타 채권에 매분</li> <li>• 청산은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종료되며 배분잔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배분</li> </ul>
결손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li> <li>•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li> <li>•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li> <li>•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li> </ul>

<체납관리 절차>(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

**가. 독촉 (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및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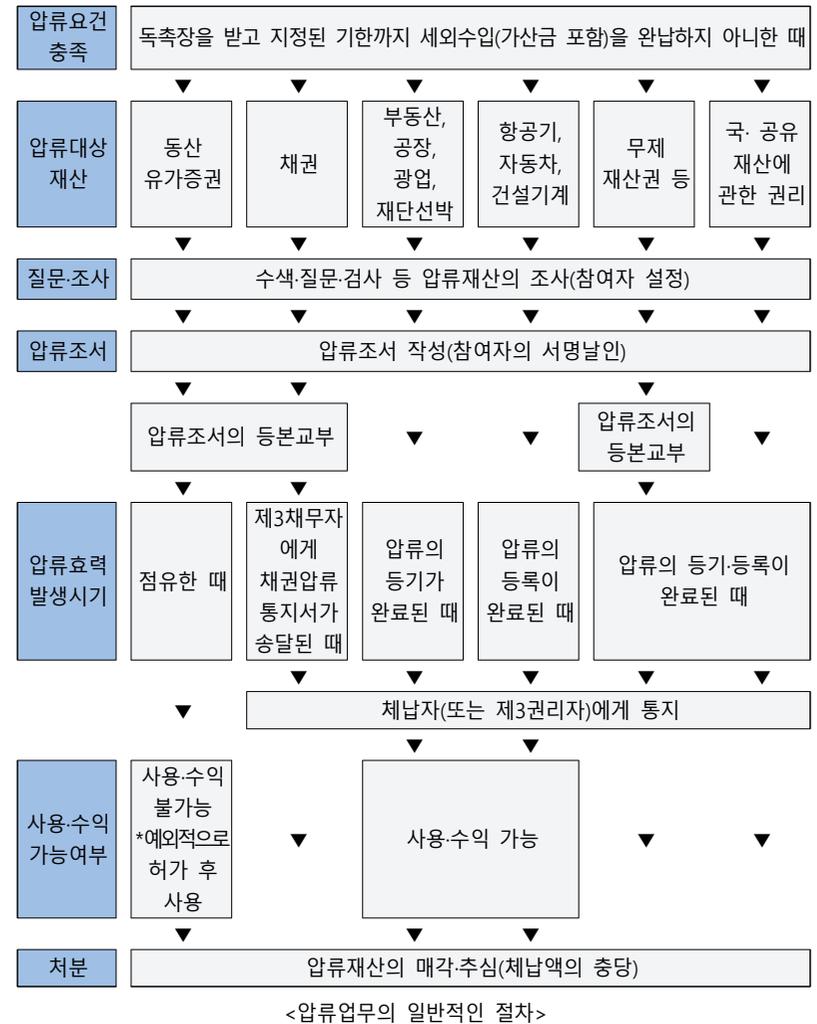
- 1)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에 의한 부과금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2)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수권 행사에 유의
  -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나.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 조사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 1)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 유무를 조사하여야 함
- 2) 재산유무 조사 시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서면 조사 시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재산조회 대상 : 토지, 건물, 차량, 유가증권(예금, 채권 등)
  - ※ 재산조회 사례 [부록] 참조

**다. 압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 1) 압류는 부과금의 납부 독촉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해야하며, 과산·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 즉시 압류하여야 함
- 2) 재산의 압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 등의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제4관 부터 제8관까지의 규정을 준용.



**라. 매각 및 청산**

- 1)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

**마. 결손처분 (정리보류)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 중지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1개월 간 공고하여야 함(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③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야 함.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함.
- ※ 결손처분 양식 [부록] 참조

**※ 결손처분예시**

■ 부과개요

- 법인현황

상호 (대표자)	영업 당시		비고
	업종	소재지	
○○○○(주) (○○○)	○○○업	○○도 ○○시 ○○구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00.00. 배출시설허가</li> <li>• 2000.00.00. ○○○업 등록</li> <li>• 2000.00.00. ○○○업 폐업</li> </ul>

■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 부과사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BOD, TOC, ... ..)
- 부과금액: 000,000,000원 (1차 000,000,000원, 2차 000,000원, 3차 000,000원, 4차 000,000원)
-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41조
  - 적발일자: 1차 2000.00.00, 2차 2000.00.00, 3차 2000.00.00, 4차 2000.00.00
  - 부과일자: 1차 2000.00.00, 2차 2000.00.00, 3차 2000.00.00, 4차 2000.00.00

**■ 체납 및 징수현황**

• 체납금액: 000,000,000원(4건) = 부과금 0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

구분	영업 당시				회수
	총 부과금	부과금	가산금 (부과금 × 3%)	증가산금 (부과금 × 1.2%, 0.75%)	
계	46,740,358,060	26,628,587,530	824,812,770	19,286,957,760	60회한
1차	36,067,795,220	20,610,168,960	618,305,060	14,839,321,200	60회
2차	8,620,097,790	4,925,770,290	147,773,100	3,546,554,400	60회
3차	1,278,783,770	490,296,990	40,263,010	748,223,770	60회
4차	773,681,280	602,351,290	18,471,600	152,858,390	26회

• 징수금액: 865,172,740원

징수내역	징수금액(원)	비고
계	865,172,740	
자진납부	514,164,500	○○○○(주) 일부금액 자진분할 납부
체납처분	351,008,240	위탁처리비·은행예금 추심, 차량공매 등

**■ 체납금 발생사유 분석**

〈 체납금 발생사유(예시)〉

- 관허사업 제한 불가-수질기준 지속 초과(사업자) 및 납부 어려운 부과금(가산금 포함) 지속 부과
- 각종 소송제기 남발(총 20건)로 부과 지연
- 압류재산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무배당
- 세외수입은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 불가(조세만 가능)
- 은행권 거래정보 조회불가
- 법인존속 및 소멸시효 미도래

**■ 20○○년 기준 ○○○○(주) 현 상황**

- 사업장: 영업소재지 보유 없음
  - 법원경매로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 대표자(○○○) 거주지 확인결과: 법인 영업활동 발견못함

■ 2000년 기준 0000(주) 재산조회 결과

• 토지, 건물, 차량 등 소유재산: 없음

• 토지(토지과), 차량(00시 차량등록사업소), 재산(000시 세무과)

• 예금: 00은행 예금 외에는 징수 실패 거래계좌 없음

• 금융정보 조회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등의 있어야 금융정보 조회 가능  
- 00개 은행에 금융정보 조회 실시

• 금융정보 조회결과

실효없음: 00개(거래계좌 없음 00개, 잔액 000원미만 00개)  
실효있음: 0개(00은행 00,000,000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처리 완료, 00.00.00(월))  
- 은행 추심완료 현재 징수 실패 거래계좌는 없음

■ 체납금 결손처분 검토결과

- 0000(주)의 사업장은 경매로 (주)00으로 소유권 이전·폐업 후 현재는 법인·영업활동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계좌 포함한 0000 재산조회 결과, 체납처분 가능 재산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 영업활동 없으며 더 이상 징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0000(주)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가산금 부과를 지속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0000(주) 은행계좌 압류해제하고 배출부과금 체납금 000,000,000원(부과금 0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에 대해 결손처분 조치하고자 함

■ 향후 조치계획

- '2000.00 (월): 압류해제 통지(시→은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손입력
  - 징수권 시효만료일(압류해제 후 5년)까지 계속 재산조사·관리: 연 2회  
- 시효만료전 재산 발견시는 불납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금 재부과  
- 발견 재산은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조치
- ※ 재부과시 경과기간까지 증가산금 가산

바. 대금지급 정지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사.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 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3) 2)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체제·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음.
- 4) 지방행정체제·부과금관계법에서 부과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2) 및 3)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또는 2)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함.
- 6) 주무관청은 1)의 단서 또는 2)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아. 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부과금(결손처분한 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체납된 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체제·부과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없음.
- 2) 지방자치단체는 1)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함
- 4) 1)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 5) 1)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함.

**자. 준용규정**

- 1)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제3장 강제징수의 규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함.

**※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당면무효 사유는 아님
- (법무심의관실-4402. 2017.03.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독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세징수법」 제23조의 독촉·최고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61조의 독촉·최고 절차를 거친 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대법원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규정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

**부 록**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가. 기본부과금**

- 1)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이 없는 경우

① 업체현황

- 사업장 규모 : 2종(배출구 : 1개소)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나지역(BOD, SS : 120, TOC : 75mg/L)
- 방류수 수질기준 : BOD, SS : 10 mg/L, TOC : 15 mg/L
- 부과기간 중 조업일수 : 150일
- 부과기간 중 지도·점검 횟수 : 3회(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

② 오염도 검사결과

• 자가측정결과(6회)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	평균
배출농도 (mg/L)	BOD	60.0	60.0	50.0	60.0	70.0	80.0	380.0	63.3
	TOC	30.0	40.0	30.0	30.0	50.0	40.0	220.0	36.7
	SS	60.0	70.0	70.0	80.0	70.0	60.0	410.0	68.3
일일유량(m <sup>3</sup> )		900.0	900.0	1,000.0	900.0	1,000.0	1,000.0	5,700.0	950.0
오염물질 배출량 (kg)	BOD	54.00	54.00	50.00	54.00	70.00	80.00	362.0	60.3
	TOC	27.00	36.00	30.00	27.00	50.00	40.00	210.0	35.0
	SS	54.00	63.00	70.00	72.00	70.00	60.00	389.0	64.8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3회)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계	평균
배출농도 (mg/L)	BOD	90.0	120.0	80	290.0	96.6
	TOC	60.0	75.0	50	185.0	61.6
	SS	90.0	100.0	70	260.0	86.6
일일유량(m <sup>3</sup> )		900.0	1,000.0	1,000.0	2,900.0	966.6
오염물질 배출량 (kg)	BOD	81.00	120.00	80.00	281.0	93.6
	TOC	54.00	75.00	50.00	179.0	59.6
	SS	81.00	100.00	70.00	251.0	83.6

※ 2회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BOD, TOC) 배출허용기준 값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③ 오염물질량 산출

- 일일평균배출량 : (자가측정평균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점검횟수 + 1)
  - BOD : (60.3 + 81 + 120 + 80) ÷ 4 = 85.3 Kg/일
  - TOC : (35.0 + 54 + 75 + 50) ÷ 4 = 53.5 Kg/일
  - SS : (64.8 + 81 + 100 + 70) ÷ 4 = 78.9 Kg/일
- 일일평균유량 = (자가측정평균 + 점검기관의 점검결과) ÷ (점검횟수 + 1)
  - = (950 + 900 + 1,000 + 1,000) ÷ 4 = 962.5 m3/일
- 평균배출농도 : (자가측정평균 + 점검기관의 점검결과) ÷ (점검횟수 + 1)
  - BOD : (63.3 + 90 + 120 + 80) ÷ 4 = 88.3 mg/L
  - TOC : (36.7 + 60 + 75 + 50) ÷ 4 = 55.4 mg/L
  - SS : (68.3 + 90 + 100 + 70) ÷ 4 = 82.0 mg/L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농도 × 일일평균유량)
  - BOD : 85.3 kg - (10 mg/L × 962,500 L/일 × 10<sup>-6</sup>) = 75.6 kg/일
  - TOC : 53.5 kg - (15 mg/L × 962,500 L/일 × 10<sup>-6</sup>) = 39.0 kg/일
  - SS : 78.9 kg - (10 mg/L × 962,500 L/일 × 10<sup>-6</sup>) = 69.2 kg/일
- 확정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조업일수
  - BOD : 75.6 kg/일 × 150일 = 11,340 kg
  - TOC : 39.0 kg/일 × 150일 = 5,850 kg(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69.2 kg/일 × 150일 = 10,380 kg

※ 검사배출량(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 산출)

- BOD : {93.6 kg/일 - (10 mg/L × 966,667 L × 10<sup>-6</sup>)} × 150일 = 12,590 kg
- SS : {83.6 kg/일 - (10 mg/L × 966,667 L × 10<sup>-6</sup>)} × 150일 = 11,090 kg

•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지 여부 확인
- BOD : (12,590 - 11,340) ÷ 12,590 × 100 = 9.9% (20% 이내 조정없음)
- SS : (11,090 - 10,380) ÷ 11,090 × 100 = 6.3% (20% 이내 조정없음)
- 확정배출량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확정배출량을 적용

④ 부과금 산정

- 지역별 부과계수 : 1(나지역)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22년)
- 사업장별 부과계수 : 1.3(2종)
- 초과율별 부과계수 =  $\frac{(\text{평균배출농도} - \text{방류수수질기준농도})}{(\text{배출허용기준농도} - \text{방류수수질기준농도})} \times 100$ 
  - BOD : (88.3 - 10) ÷ (120 - 10) × 100 = 71.1% → 2.4
  - SS : (82.0 - 10) ÷ (120 - 10) × 100 = 65.4% → 2.2
- 부과금 산정
  - 기준이내 배출량(kg) ×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250원) × 연도별 산정지수(6.0229) × 사업장별 부과계수(1.3) × 지역별 부과계수(1)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BOD 2.4, SS 2.2)

- BOD : 11,340 kg × 250 원/kg × 6.0229 × 1.3 × 1 × 2.4 = 53,273,755 원  
 = 53,273,750 원

- SS : 10,380 kg × 250 원/kg × 6.0229 × 1.3 × 1 × 2.2 = 44,700,156 원  
 = 44,700,150 원

2)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이 있는 경우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 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① 업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규모 : 1종(배출구 : 1개소)</li> <li>•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가지역(BOD, SS : 60, TOC : 40mg/L)</li> <li>• 부과기간 중 조업일수 : 150일</li> <li>• 부과기간 중 지도·점검 횟수 : 3회(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li> <li>• 예정배출량 자료 미제출</li> </ul>
---

② 오염도 검사결과

• 자가측정결과(총 6회로 가정)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	평균	
배출 농도 (mg/L)	BOD	20.0	20.0	10.0	20.0	15.0	20.0	105.0	17.5
	TOC	25.0	20.0	30.0	30.0	25.0	30.0	160.0	26.7
	SS	30.0	30.0	35.0	30.0	45.0	40.0	210.0	35.0
일일유량(m <sup>3</sup> )	3,200.0	3,100.0	3,300.0	3,200.0	3,100.0	3,300.0	19,200.0	3,200.0	
오염 물질 배출량 (kg)	BOD	64.00	62.00	33.00	64.00	46.50	66.00	335.5	55.9
	TOC	80.00	62.00	99.00	96.00	77.50	99.00	513.5	85.6
	SS	96.00	93.00	115.50	96.00	139.50	132.00	672.0	112.0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총 3회로 가정)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계	평균	
배출농도 (mg/L)	BOD	55.0	60.0	55	170.0	56.7
	TOC	30.0	35.0	30	95.0	31.6
	SS	45.0	50.0	45	140.0	46.6
일일유량(m <sup>3</sup> )	3,400.0	3,400.0	3,300.0	10,100.0	3,366.7	
오염물질 배출량 (kg)	BOD	187.00	204.00	181.50	572.5	190.8
	TOC	102.00	119.00	99.00	320.0	106.6
	SS	153.00	170.00	148.50	471.5	157.1

※ 2회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BOD)로 배출허용기준 값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③ 오염물질량 산출

• 일일평균 배출량

- BOD :  $(55.9 + 187 + 204 + 181.5) \div 4 = 157.1$  Kg/일
- TOC :  $(85.6 + 102 + 119 + 99) \div 4 = 101.4$  Kg/일
- SS :  $(112.0 + 153 + 170 + 148.5) \div 4 = 145.8$  Kg/일

• 일일평균유량

$$= (3,200 + 3,400 + 3,400 + 3,300) \div 4 = 3,325.0 \text{ m}^3/\text{일}$$

• 평균배출농도

- BOD :  $(17.5 + 55 + 60 + 55) \div 4 = 46.8$  mg/L
- TOC :  $(26.7 + 30 + 35 + 30) \div 4 = 30.4$  mg/L
- SS :  $(35 + 45 + 50 + 45) \div 4 = 43.7$  mg/L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BOD :  $157.1 \text{ kg} - (10 \text{ mg/L} \times 3,325,000 \text{ L/일} \times 10^{-6}) = 123.8 \text{ kg/일}$
- TOC :  $101.4 \text{ kg} - (15 \text{ mg/L} \times 3,325,000 \text{ L/일} \times 10^{-6}) = 51.5 \text{ kg/일}$
- SS :  $145.8 \text{ kg} - (10 \text{ mg/L} \times 3,325,000 \text{ L/일} \times 10^{-6}) = 112.5 \text{ kg/일}$

• 확정배출량

- BOD :  $123.8 \text{ kg/일} \times 150 \text{ 일} = 18,570 \text{ kg}$
- TOC :  $51.5 \text{ kg/일} \times 150 \text{ 일} = 7,725 \text{ kg}$  (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112.5 \text{ kg/일} \times 150 \text{ 일} = 16,875 \text{ kg}$

※ 검사배출량(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 BOD :  $\{190.8 \text{ kg/일} - (10 \text{ mg/L} \times 3,366,667 \text{ L} \times 10^{-6})\} \times 150 \text{ 일} = 23,570 \text{ kg}$
- SS :  $\{157.1 \text{ kg/일} - (10 \text{ mg/L} \times 3,366,667 \text{ L} \times 10^{-6})\} \times 150 \text{ 일} = 18,515 \text{ kg}$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지 여부 확인
- BOD :  $(23,570 - 18,570) \div 23,570 \times 100 = 21.2 \%$   
(20% 이상 초과하므로 검사배출량을 적용하고 20% 가산)
- SS :  $(18,515 - 16,875) \div 18,515 \times 100 = 8.9 \%$   
(확정배출량을 그대로 적용)

<기준이내 배출량>

$$BOD = 23,570kg \times \frac{(120)}{(100)} = 28,284kg$$

$$SS = 16,875kg$$

④ 부과금 산정

- 지역별 부과계수 : 1.5(가지역)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22년)
- 초과율별 부과계수

$$BOD = \frac{(56.7 - 10)}{(60 - 10)} \times 100 = 93.4\% \rightarrow 2.8$$

※ 사업자의 확정배출량을 인정하지 않고, 점검기관의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SS = \frac{(43.7 - 10)}{(60 - 10)} \times 100 = 67.5\% \rightarrow 2.2$$

• 기준이내 배출부과금

- BOD :  $28,284 \text{ kg} \times 250 \text{ 원/kg} \times 6.0229 \times 1.5 \times 2.8 = 178,869,289 \text{ 원}$   
= 178,869,280 원
- SS :  $16,875 \text{ kg} \times 250 \text{ 원/kg} \times 6.0229 \times 1.5 \times 2.2 = 83,850,061 \text{ 원}$   
= 83,850,060 원

나. 초과부과금

1) 유기물질(BOD 또는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현황> - 지역 : 나지역

- 배출농도

- BOD : 250 mg/L (기준 : 120 mg/L 이하, 초과농도 : 130 mg/L)
- TOC : 90 mg/L (기준 : 75 mg/L 이하, 초과농도 : 15 mg/L)

- 일일유량 : 500,000 L/일 (3종 사업장)

- 배출기간 : 15일, 위반횟수 : 1회

※ 오염물질 적용 대상 : BOD와 TOC가 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각각의 부과금을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의 항목을 적용

① BOD 1kg당 부과금액 = 250 원

TOC 1kg당 부과금액 = 450 원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배출기간

BOD = 500,000 L/일 × 130 mg/L × 10-6 × 15일 = 975 kg

TOC = 500,000 L/일 × 15 mg/L × 10-6 × 15일 = 112.5 kg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BOD =  $(250 - 120) \text{ mg/L} \div 120 \text{ mg/L} \times 100 = 108\% \Rightarrow 5.0$

TOC =  $(90 - 75) \text{ mg/L} \div 75 \text{ mg/L} \times 100 = 20\% \Rightarrow 4.0$

④ 지역별 부과계수 = 1.5(나지역)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22년도)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3

⑦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 = 200만원(3종사업장)

초과부과금(BOD) = ① 250 원/ kg × ② 975 kg × ③ 5.0 × ④ 1.5 × ⑤ 6.0229 × ⑥ 1.3 = 14,313,790 원

초과부과금(TOC) = ① 450 원/ kg × ② 112.5 kg × ③ 4.0 × ④ 1.5 × ⑤ 6.0229 × ⑥ 1.3 = 2,972,860 원

BOD와 TOC가 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각각의 부과금을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의 항목을 적용하므로

∴ 14,313,790원(BOD) + ⑦ 2,000,000원 = 16,313,790원

2) 특정유해물질(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현황> - 지역 : 나지역  
 - Cd 배출농도 : 0.38 mg/L (기준 : 0.1 mg/L 이하, 초과농도 : 0.28 mg/L)  
 - 일일유량 : 45,000 L/일 (5종 사업장)  
 - 배출기간 : 75일  
 - 위반횟수 : 1회

- ① 오염물질(Cd) kg당 부과금액 = 500,000 원
-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0.945 kg  
 =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a) × 배출기간(b)  
 (a)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sup>-6</sup>  
 = 0.28 mg/L × 45,000 L × 10<sup>-6</sup> = 0.0126 kg  
 (b) 배출기간 75일  
 ∴ (a) × (b) = 0.0126 kg × 75일 = 0.945 kg
-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6.0  
 (0.38-0.1) mg/L ÷ 0.1 mg/L × 100 = 280 % ⇒ 6.0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1.5(나지역)
-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22년도)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1
- ⑦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 = 50만원(5종사업장)

초과부과금액 = ① 500,000 원/kg × ② 0.945 kg × ③ 6.0 × ④ 1.5 × ⑤ 6.0229 × ⑥ 1.1 +  
 ⑦ 50,000 원 = 28,673,620 원

3)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현황> - 지역 : 청정지역  
 - 배출농도  
 • BOD : 250.8 mg/L (기준 : 40 mg/L 이하, 초과농도 : 210.8 mg/L)  
 • TOC : 557.3 mg/L (기준 : 30 mg/L 이하, 초과농도 : 527.3 mg/L)  
 • SS : 114.2 mg/L (기준 : 40 mg/L 이하, 초과농도 : 74.2 mg/L)  
 • T-N : 122.6 mg/L (기준 : 30 mg/L 이하, 초과농도 : 92.6 mg/L)  
 • T-P : 22.1 mg/L (기준 : 4 mg/L 이하, 초과농도 : 18.1 mg/L)  
 - 일일유량 : 5,000 L (5종 사업장)  
 - 배출기간 : 13일(시료채취일 : 8.1, 개선완료일 : 9.19, 휴무일 : 37일)  
 - 위반횟수 : 1회

※ 유기물질 오염물질 적용 대상 : BOD와 TOC가 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각각의 부과금을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의 항목을 적용

- ① 1kg당 부과금액 : BOD = 250 원, TOC = 450 원, SS = 250 원, T-N, T-P = 500 원
-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sup>-6</sup> × 배출기간
  - ① BOD = 5,000 L/일 × 210.8 mg/L × 10<sup>-6</sup> × 13일  
 = 1.05 kg × 13일 = 13.6 kg(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② TOC = 5,000 L/일 × 527.3 mg/L × 10<sup>-6</sup> × 13일  
 = 2.64 kg × 13일 = 34.3 kg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③ SS = 5,000 L/일 × 74.2 mg/L × 10<sup>-6</sup> × 13일  
 = 0.37 kg × 13일 = 4.8 kg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④ T-N = 5,000 L/일 × 92.6 mg/L × 10<sup>-6</sup> × 13일  
 = 0.46 kg × 13일 = 5.9 kg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⑤ T-P = 5,000 L/일 × 18.1 mg/L × 10<sup>-6</sup> × 13일  
 = 0.09 kg × 13일 = 1.1 kg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③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농도 ÷ 기준농도 × 100 = ( )%
  - ① BOD : (210.8 ÷ 40)mg/L × 100 = 527 % ⇒ 7.0
  - ② TOC : (527.3 ÷ 30)mg/L × 100 = 1,757 % ⇒ 7.0
  - ③ SS : (74.2 ÷ 40)mg/L × 100 = 186 % ⇒ 5.5
  - ④ T-N : (92.6 ÷ 30)mg/L × 100 = 309 % ⇒ 6.5
  - ⑤ T-P : (18.1 ÷ 4)mg/L × 100 = 453 % ⇒ 7.0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2(청정지역)
-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22년도)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1(5종사업장)
- ⑦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 = 50만원(5종사업장)

여기서, BOC와 TOC가 동시 초과 시 각각의 부과금을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의 항목인 TOC를 적용

- ▶ 처리부과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초과부과금(BOD) = ① 250 원/kg × ② 13.6 kg × ③ 7.0 × ④ 2 × ⑤ 6.0229 × ⑥ 1.1 = 315,359원
- 초과부과금(TOC) = ① 450 원/kg × ② 34.3 kg × ③ 7.0 × ④ 2 × ⑤ 6.0229 × ⑥ 1.1 = 1,431,637원
- ▶ 최종처리부과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TOC = 450원/ kg × 34.3 kg × 7.0 × 2 × 6.0229 × 1.1 = 1,431,637.30원 ⇒ 1,431,630원 (10원 미만 절사)
- SS = 250원/ kg × 4.8 kg × 5.5 × 2 × 6.0229 × 1.1 = 87,871.55원 ⇒ 87,870원 (10원 미만 절사)
- T-N = 500원/ kg × 5.9 kg × 6.5 × 2 × 6.0229 × 1.1 = 254,076.03원 ⇒ 254,070원 (10원 미만 절사)
- T-P = 500원/ kg × 1.1 kg × 7.0 × 2 × 6.0229 × 1.1 = 51,013.96원 ⇒ 51,010원 (10원 미만 절사)
소계(TOC + SS + T-N + T-P) = 1,824,580원

초과부과금액 = 처리부과금 +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 1,824,580원 + 500,000원 = 2,324,580원
--

#### 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규모 : 1종(처리용량 3,000 m3/일)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청정지역(2024년 기준)

항목	BOD	TOC	SS	TN	TP
배출허용기준	30	25	30	30	4
방류수수질 기준	10	25	10	20	2

##### ■ 사업장 현황 가정

- 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 내에 SS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라 법 제39조에 의하여 제1차 개선명령을 받음
- 2024년 9월 1일 SS 24시간 평균자료가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함에 따라 제2차 개선 명령을 받고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선명령 이행

##### ■ 부과금 산정 기간

- 12일간('24.9.1~9.12) SS 자동측정 자료를 전송받아 측정자료를 확정하고 기본 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

##### 2) 24시간 평균자료 산정

##### ① 자동측정자료 수집 및 확정

- SS 및 유량의 시간자료

일자		SS(mg/L)	유량(m <sup>3</sup> )
년-월-일	시간		
2024-08-31	14시	28.2	1,051.3
2024-08-31	15시	27.5	1,052.2
		⋮	
2024-09-01	00시	26.8	1,051.8
2024-09-01	01시	27.8	1,053.2
		⋮	
2024-09-01	10시	29.2	1,051.3
2024-09-01	11시	28.5	1,052.2
2024-09-01	12시	27.7	1,052.8
2024-09-01	13시	28.5	1,055.5
2024-09-01	14시	68.2	1,045.4

일자		SS(mg/L)	유량(m <sup>3</sup> )
년-월-일	시간		
2024-09-01	15시	32.3	1,055.3
2024-09-01	16시	33.2	1,049.7
2024-09-01	17시	35.2	1,050.3
⋮			
2024-09-11	00시	27.0	1,055.2
2024-09-11	01시	25.5	1,011.2
⋮			
2024-09-11	23시	29.2	1,048.1
2024-09-12	00시	25.2	1,049.1
2024-09-12	01시	26.2	1,048.3
2024-09-12	02시	24.8	1,052.5
2024-09-12	03시	22.2	1,046.2
2024-09-12	04시	21.8	1,052.0
2024-09-12	05시	25.2	1,008.0
⋮			
2024-09-12	16시	29.5	1,008.0
2024-09-12	17시	15.5	1,051.1
2024-09-12	18시	18.5	1,049.4
2024-09-12	19시	19.2	1,053.6
2024-09-12	20시	24.4	1,047.3
2024-09-12	21시	25.5	1,053.1
2024-09-12	22시	26.2	1,046.0
2024-09-12	23시	25.5	1,055.5

② 24시간 평균자료 산정

• 24시간 평균자료 산정방법

년-월-일	시간	측정자료	산출근거
2024-09-01	13시	SS (mg/L)	• 전일 14시부터 당일 1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8.5 = {27.5 + ... + 68.2} / 24
		유량 (m <sup>3</sup> )	• 전일 14시부터 당일 1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53.4 = {1,051.3 + ... + 1,055.5} / 24
2024-09-01	14시	SS (mg/L)	• 전일 15시부터 당일 14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30.1 = {26.8 + ... + 68.2} / 24
		유량 (m <sup>3</sup> )	• 전일 15시부터 당일 14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51.2 = {1,052.2 + ... + 1,045.4} / 24

2024-09-12	22시	SS (mg/L)	• 전일 23시부터 당일 22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3.3 = {29.2 + ... + 26.2} / 24
		유량 (m <sup>3</sup> )	• 전일 23시부터 당일 22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43.0 = {1,048.1 + ... + 1,053.6} / 24
2024-09-12	23시	SS (mg/L)	• 당일 00시부터 당일 2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3.2 = {25.2 + ... + 25.5} / 24
		유량 (m <sup>3</sup> )	• 당일 00시부터 당일 2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43.3 = {1,049.1 + ... + 1,055.5} / 24

• 24시간 평균자료 산정결과

일자		24시간 자료	
년-월-일	시간	SS(mg/L)	유량(m <sup>3</sup> )
2024-09-01	13시	28.5	1,048.3
2024-09-01	14시	30.1	1,048.1
2024-09-01	15시	30.3	1,048.2
2024-09-01	16시	30.6	1,048.1
2024-09-01	17시	30.7	1,047.9
⋮			
2024-09-11	00시	26.9	1,051.5
2024-09-11	01시	26.5	1,051.5
⋮			
2024-09-11	23시	25.4	1,048.6
2024-09-12	00시	25.4	1,048.5
2024-09-12	01시	25.8	1,048.4
2024-09-12	02시	25.8	1,048.3
2024-09-12	03시	25.8	1,048.1
2024-09-12	04시	25.6	1,048.1
2024-09-12	05시	25.6	1,046.3
⋮			
2024-09-12	16시	24.7	1,041.9
2024-09-12	17시	24.4	1,043.7
2024-09-12	18시	24.1	1,043.5
2024-09-12	19시	23.8	1,043.6
2024-09-12	20시	23.6	1,043.2
2024-09-12	21시	23.5	1,043.4
2024-09-12	22시	23.3	1,043.0
2024-09-12	23시	23.2	1,043.3

3) 배출부과금 산정

① 기본부과금 산정

-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

일자		기준이내 배출량(kg)	산출근거
년-월-일	시간		
2024-09-01	13시	19.3	= (28.5-10) × 1,048.3 ÷ 1,000
2024-09-01	14시	20.9	= (30-10) × 1,048.1 ÷ 1,000
2024-09-01	15시	20.9	= (30-10) × 1,048.2 ÷ 1,000
2024-09-01	16시	20.9	= (30-10) × 1,048.1 ÷ 1,000
2024-09-01	17시	20.9	= (30-10) × 1,047.9 ÷ 1,000
⋮			
2024-09-11	00시	17.7	= (26.9-10) × 1,051.5 ÷ 1,000
2024-09-11	01시	17.3	= (26.5-10) × 1,051.5 ÷ 1,000
⋮			
2024-09-11	23시	16.1	= (25.4-10) × 1,048.6 ÷ 1,000
2024-09-12	00시	16.0	= (25.4-10) × 1,048.5 ÷ 1,000
2024-09-12	01시	16.5	= (25.8-10) × 1,048.4 ÷ 1,000
2024-09-12	02시	16.5	= (25.8-10) × 1,048.3 ÷ 1,000
2024-09-12	03시	16.5	= (25.8-10) × 1,048.1 ÷ 1,000
2024-09-12	04시	16.3	= (25.6-10) × 1,048.1 ÷ 1,000
2024-09-12	05시	16.2	= (25.6-10) × 1,046.3 ÷ 1,000
⋮			
2024-09-12	16시	15.3	= (24.7-10) × 1,041.9 ÷ 1,000
2024-09-12	17시	14.9	= (24.4-10) × 1,043.7 ÷ 1,000
2024-09-12	18시	14.6	= (24.1-10) × 1,043.5 ÷ 1,000
2024-09-12	19시	14.3	= (23.8-10) × 1,043.6 ÷ 1,000
2024-09-12	20시	14.2	= (23.6-10) × 1,043.2 ÷ 1,000
2024-09-12	21시	14.0	= (23.5-10) × 1,043.4 ÷ 1,000
2024-09-12	22시	13.8	= (23.3-10) × 1,043.0 ÷ 1,000
2024-09-12	23시	13.7	= (23.2-10) × 1,043.3 ÷ 1,000

비고: 1. 기준이내배출량은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2. SS의 배출허용기준 30mg/L, 방류수수질기준 10mg/L

■ 부유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kg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

■ 1종사업장(2,000 m3/일~4,000 m3/일)의 사업장별 부과계수 : 1.4

■ 청정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 : 1.5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일자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부과계수
2024-09-01	13시	(28.5-10) ÷ (30-10) × 100 = 92.5	2.8
2024-09-01	14시	(30.1-10) ÷ (30-10) × 100 = 100.5	2.8
2024-09-01	15시	(30.3-10) ÷ (30-10) × 100 = 101.5	2.8
2024-09-01	16시	(30.6-10) ÷ (30-10) × 100 = 103.0	2.8
2024-09-01	17시	(30.7-10) ÷ (30-10) × 100 = 103.5	2.8
⋮			
2024-09-11	00시	(26.9-10) ÷ (30-10) × 100 = 84.5	2.6
2024-09-11	01시	(26.5-10) ÷ (30-10) × 100 = 82.5	2.6
⋮			
2024-09-11	23시	(25.4-10) ÷ (30-10) × 100 = 77.0	2.4
2024-09-12	00시	(25.4-10) ÷ (30-10) × 100 = 77.0	2.4
2024-09-12	01시	(25.8-10) ÷ (30-10) × 100 = 79.0	2.4
2024-09-12	02시	(25.8-10) ÷ (30-10) × 100 = 79.0	2.4
2024-09-12	03시	(25.8-10) ÷ (30-10) × 100 = 79.0	2.4
2024-09-12	04시	(25.6-10) ÷ (30-10) × 100 = 78.0	2.4
2024-09-12	05시	(25.6-10) ÷ (30-10) × 100 = 78.0	2.4
⋮			
2024-09-12	16시	(24.7-10) ÷ (30-10) × 100 = 74.0	2.4
2024-09-12	17시	(24.4-10) ÷ (30-10) × 100 = 72.0	2.4
2024-09-12	18시	(24.1-10) ÷ (30-10) × 100 = 70.0	2.4
2024-09-12	19시	(23.8-10) ÷ (30-10) × 100 = 69.0	2.2
2024-09-12	20시	(23.6-10) ÷ (30-10) × 100 = 68.0	2.2
2024-09-12	21시	(23.5-10) ÷ (30-10) × 100 = 67.0	2.2
2024-09-12	22시	(23.3-10) ÷ (30-10) × 100 = 66.5	2.2
2024-09-12	23시	(23.2-10) ÷ (30-10) × 100 = 66.0	2.2

• 기본부과금 산정

일자		기본부과금(원)	산출내역
년-월-일	시간		
2024-09-01	13시	170,875	= 19.3×250×6.0229×1.4×1.5×2.8
2024-09-01	14시	185,041	= 20.9×250×6.0229×1.4×1.5×2.8
2024-09-01	15시	185,041	= 20.9×250×6.0229×1.4×1.5×2.8
2024-09-01	16시	185,041	= 20.9×250×6.0229×1.4×1.5×2.8
2024-09-01	17시	185,041	= 20.9×250×6.0229×1.4×1.5×2.8
⋮			
2024-09-11	00시	145,516	= 17.7×250×6.0229×1.4×1.5×2.6
2024-09-11	01시	142,227	= 17.3×250×6.0229×1.4×1.5×2.6
⋮			
2024-09-11	23시	122,180	= 16.1×250×6.0229×1.4×1.5×2.4
2024-09-12	00시	121,421	= 16.0×250×6.0229×1.4×1.5×2.4
2024-09-12	01시	125,216	= 16.5×250×6.0229×1.4×1.5×2.4
2024-09-12	02시	125,216	= 16.5×250×6.0229×1.4×1.5×2.4
2024-09-12	03시	125,216	= 16.5×250×6.0229×1.4×1.5×2.4
2024-09-12	04시	123,698	= 16.3×250×6.0229×1.4×1.5×2.4
2024-09-12	05시	122,939	= 16.2×250×6.0229×1.4×1.5×2.4
⋮			
2024-09-12	16시	116,109	= 15.3×250×6.0229×1.4×1.5×2.4
2024-09-12	17시	113,073	= 14.9×250×6.0229×1.4×1.5×2.4
2024-09-12	18시	110,797	= 14.6×250×6.0229×1.4×1.5×2.4
2024-09-12	19시	99,477	= 14.3×250×6.0229×1.4×1.5×2.2
2024-09-12	20시	98,781	= 14.2×250×6.0229×1.4×1.5×2.2
2024-09-12	21시	97,390	= 14.0×250×6.0229×1.4×1.5×2.2
2024-09-12	22시	95,999	= 13.8×250×6.0229×1.4×1.5×2.2
2024-09-12	23시	95,303	= 13.7×250×6.0229×1.4×1.5×2.2
합계		7,500,271	※ 2024-09-01 13시 ~ 2024-09-12 23시 기간의 기본배출부과금 합계

② 초과부과금 산정

•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일자		기준초과 배출량(kg)	산출근거
년-월-일	시간		
2024-09-01	14시	0.1	= (30.1 - 30) × 1,048.1 ÷ 1,000
2024-09-01	15시	0.3	= (30.3 - 30) × 1,048.2 ÷ 1,000
2024-09-01	16시	0.6	= (30.6 - 30) × 1,048.1 ÷ 1,000
2024-09-01	17시	0.7	= (30.7 - 30) × 1,047.9 ÷ 1,000

※ 비교. 기준초과배출량은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함.

- 부유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kg
- 2024년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6.0229
- 청정지역(2024년 기준)의 지역별 부과계수 : 2.0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5
- 1종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 400만원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일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부과계수
2024-09-01	14시	(30.1 - 30) ÷ 30 × 100 = 0.4	3.0
2024-09-01	15시	(30.1 - 30) ÷ 30 × 100 = 1.1	3.0
2024-09-01	16시	(30.1 - 30) ÷ 30 × 100 = 2.1	3.0
2024-09-01	17시	(30.1 - 30) ÷ 30 × 100 = 2.3	3.0

• 초과부과금 산정

- 위반횟수 : 최근 2년 이내 1차 개선명령을 받고 2024년 9월 1일 SS 초과로 인하여 제2차 개선명령을 받았으므로 위반 횟수는 2회로 산정

• 초과부과금

일자		초과부과금(원)	산출내역
년-월-일	시간		
2024-09-01	14시	2,032	= 0.1 × 250 × 6.0229 × 2.0 × 3.0 × 1.5 × 1.5
2024-09-01	15시	6,098	= 0.3 × 250 × 6.0229 × 2.0 × 3.0 × 1.5 × 1.5
2024-09-01	16시	12,196	= 0.6 × 250 × 6.0229 × 2.0 × 3.0 × 1.5 × 1.5
2024-09-01	17시	14,229	= 0.7 × 250 × 6.0229 × 2.0 × 3.0 × 1.5 × 1.5
-		4,000,000	1종사업장 정액부과금
합계		4,034,555	

③ 배출부과금 산정결과

- 총 배출부과금 : 기본부과금(7,500,271원)+초과부과금(4,034,555원)=11,534,826원
- 상세내역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계	개선기간 내 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7,500,271원	4,034,555원	34,555원	4,000,000원

## 질의 회신 사례

◆ 본 질의 회신자료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의 답변 자료로, 향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1. 부과대상·기간

1) 기본부과금 적용대상 오염물질 (2004. 9월)

**【질의】**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에서 물리화학적처리를 하는 업체로 유기물질 측정 시 COD를 측정하는데 BOD측정이 의미가 있는지와 수질 기본부과금 부과 시 BOD 측정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수질 기본부과금은 유기물질(BOD, COD) 및 부유물질(SS)항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BOD와 COD를 측정할 경우에는 유기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이 큰 값을 적용함

※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에 따라 '22.1.1.부터는 COD 대신 TOC를 적용 중

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2010. 7월)

**【질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관련규정에는 분기별 1회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를 받기 1회(당해 부과금 부과기간내) 실시한 경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오염도검사횟수가 규정보다 적다하여 이를 행정절차의 하자로 보아 오염도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부과기간중 실시한 1회의 오염도검사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를 행정절차적 하자로 보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여부 (2004. 11월)

- 【질의】** 하수처리구역 내 세차장인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부유물질이 초과한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특정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만 하여야 되는 건 아닌지)
- 【회신】** 하수처리구역내·외와 상관없이 오염도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 결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유물질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초과배출 부과금이 부과됨

4)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2010. 7월)

- 【질의】**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시설개선 후 개선명령이행완료 보고에 따른 현지 확인시 채수한 처리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개선완료 이행기간 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하여 외부로 방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수질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가능한지 동 사업장은 폐수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그 외에는 폐수를 집수 및 침전시설에 모아 재이용하고 있어, 가동개시신고 및 개선완료보고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무방류 운영상태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방지 시설 정상가동 시 오염도검사 확인을 위해 방지시설(여과시설)을 가동시켜 채수하였고, 개선기간 중에도 계속된 조업으로 폐수는 발생하였으나 재이용으로 무방류 상태임.
- 【회신】**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재이용 등으로 실제 배출(방류)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 배출(방류)한 수질오염물질이 없으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대상 (2013. 11월)

- 【질의】** 기본배출부과금은 1~4종 사업장에 부과를 하는데,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sup>3</sup> 이상, 200m<sup>2</sup> 미만인 사업장)이나, 위탁하는 양을 제외하고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의 양이 50m<sup>3</sup>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인지?
- 【회신】** 4종사업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6)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경우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여부 (2011년)

- 【질의】** 냉동창고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로 유입시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대상이 되는지?
- 【회신】** 배출부과금의 부과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때의 폐수배출시설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시설과 무허가 또는 무신고 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된 폐수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여부에 관계없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다만,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폐수에 대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음

7) 개선기간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금 부과 (2022. 6월)

- 【질의】** 폐수배출시설 개선기간 중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 기준 적용 여부?
- 【회신】** 개선기간 중에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초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8) 행정처분기간 중 2차 행정처분 가능 여부 (2013. 10월)

- 【질의】**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도축장폐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차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 처분기간중 민원이 제기되어 시에서 다시 방류수를 채수하였는데 또 배출허용기준초과로 2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선 명령으로 행정처분기간중인데 2차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이중처분이 되는게 아닌지요?
- 【회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기간 동안, 민원 발생 등으로 채수한 폐수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개선명령 처분(항목, 기간 등)과 배출부과금 항목변경 추가도 가능하나, 개선명령 기간 동안 이므로 위반횟수 누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9) 수질배출부과금의 부과금 적용 기준 (2016. 4월)

**【질의】** 저회 현장은 지역기준이 “나지역”으로 되어있으나,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적용받아 SS 기준치가 10mg/L입니다. 당 현장은 4월 중 해당 관청 공무원이 분기 채수하여 SS 기준치 10mg/L를 넘어 개선명령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 현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때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부과받는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부과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부과받는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1항에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용하여 부과금 청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 1에서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10)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 (2003. 1월)

**【질의】** 폐수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수질 환경보전법」(현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임. 이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은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시운전기간(화학적처리방식의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인지?

**【회신】** 기본부과금 제도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부과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은 가동개시신고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산정하여야 함

11)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 산정 관련 (2010년)

**【질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현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인데,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면 그 유입시점의 기준은 ① 사용개시 공고일: '08.11.24, ② 사용개시일: '08.8.22, ③ 기타(또 다른 공고일) 중 언제로 봐야 하는지? 오염도 검사를 '08. 12월에 받았다면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간에 포함되는데, 이 검사 결과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시 오염물질의 측정에 의한 산정식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 기본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폐수가 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면 됨

12)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2004. 6월)

**【질의】** '03. 11. 10에 폐수배출시설신고, '03. 11. 25에 가동개시신고, '03. 11. 26 ~ '04. 02. 03까지 시운전 기간, '04. 03. 31 행정기관(환경과)에서 시료채취 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채취하지 못하여 '04. 05월 중순경 시료채취하여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시 운전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 처분(개선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채수하여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함께 처분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음. 만약,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가 정당하다면 부과기간은 언제부터이며 법적 근거는 있는지와 만약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을 하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운전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동안 회사사정이나 행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15일이 초과하였다고 동 사항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그 기간 이후에 채수한 최종방류수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산정기간은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예정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13)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2004. 6월)

**【질의】** 아래와 같은 배출업소인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04.5.14~5.24까지 1차 위반으로 보아 배출 부과금을 계산하고 '04.5.25~6.22까지 2차 위반으로 보아 별도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되는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시료채취를 한 사이의 기간을 배출부과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2차 위반을 '04.5.27~6.22.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와 배출부과금 부과 시 규모별 부과금 (50만원)은 1차 위반시, 2차위반시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 '04.05.14 : 시료 채취
- '04.5.19 : COD기준초과
- '04.05.21 : 행정처분(개선명령)-1차
- '04.05.24 :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제출
- '04.05.27 :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른 시료 채취
- '04.05.31 : COD 기준 재초과
- '04.06.02 :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 기준 계속초과)
- '04.06.08 : 개선명령이행보고제출
- '04.06.14 :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른 시료 채취
- '04.06.22 :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이내

**【회신】**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동일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 시의 위반횟수는 2회가 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임. 1차 부과기간은 '04.5.14~5.24일까지이며, 2차 부과기간은 '04.5.25~6.8일까지로 하여 부과하면 될 것임

14)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기간 (2016. 6월)

**【질의】** 폐수를 방지시설에서 유입·처리 후 방류하는 사업장이나 합동점검(2016.06.13.) 결과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무단방류 사항을 확인함. 무단방류는 2015년 4월 1일부터 방류함.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시 부과 기간을 무단배출로 확인된 날로부터 중지된 날까지의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무단배출 채수일부터 배출량을 산정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무단배출 채수일(2016. 6. 13.)부터 배출기간을 산정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함.

15)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부과기간 (2020. 4월)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3차인 조업정지 5일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조업정지 이행완료 보고일 전 수질오염방지시설(또는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최종 방류수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배출부과기간을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조업정지 이행완료 보고일까지가 아닌 개선완료 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

**【회신】** 조업정지(5일)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완료 보고 전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선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자가측정 인정 및 감면 (2004. 4월)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적발 시 초과부과금 적용일자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와 자가측정을 99년 이후 대행업자에게 의뢰치 않고 있다가 적발될 시 부과금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자가측정 대행업소로부터 성적서를 교부받았을 시 부과금 감면에 적용되는지?

**【회신】**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개선을 완료한 날(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최종방류수에 대한 자가측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배출부과금을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임

## 2. 부과금 산정·납부

### 1) 재판기간 중 가산금·증가산금 부과 (2003. 9월)

**【질의】**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취소청구에 따른 재판기간 중에 관할 관청에서 배출 부과금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하였는데 적정한지?

**【회신】** 「물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초과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기간 동안에 부과하지 못한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2)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2003. 10월)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기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한 후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싶으나 부과 금액이 많기에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의 상황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부과처분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임

### 3)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2004. 6월)

**【질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2000년 12월 30일 분납신청을 하여 납부(2회) 하던 도중에 화재로 인해 공장이 부도위기를 맞이한 경우로서 그 당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정도 손해 배상처리도 마무리되어 지금이라도 화재발생증명원, 민사 재판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징수유예를 소급하여 받아 가산금 및 증가산금에 대한 부과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다시 분납이 가능한지?

**【회신】** 경영난으로 인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배출 부과금을 분할납부를 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가 취소 되므로 가산금 부과는 면제받기가 어려울 것임. 다만, 체납된 사업장의 상황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를 부과처분기관에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임

### 4)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고려사항 (2004. 8월)

**【질의】** 상반기 중에 BOD, COD, SS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 완료하였는데, 기본부과금 산출 시 초과부과금 산출에 사용된 오염물질 결과치 2번(관계기관에 의한 오염초기 시료채취와 개선완료 후 시료채취)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현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측정결과로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확정배출량은 자가측정결과와 검사결과에 의한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2번 모두를 포함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5) 담보제공 (2004. 8월)

**【질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내에 6회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경우 ⑤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회신】**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6) 배출부과금 산정 시 TMS 자료 적용 가능 여부 (2014. 6월)

**【질의】** TMS 설치 비의무 사업장에 자체 점검·감시 용도로 TMS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함. TMS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 사용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실시, 「수질TMS 설치·운영 업무편람」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관리하지만, 비의무 사업장이어서 환경공단으로 전송은 하지 않을 때, 자체 TMS 자료를 배출부과금 산정 시 관련근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수질 TMS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관제센터에 자동측정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질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지 않으면 배출부과금 산정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7)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2010. 12월)

**【질의】** 폐수배출업소(5종)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 폐수적산유량계와 운영일지가 맞지 않아 운영일지 허위작성으로 행정처분하고 점검 당시 채수한 폐수의 오염도 검사결과 3개 (BOD, COD, SS)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바, 이 경우 초과배출금 부과시 일일유량 기준 문의

※ 지도점검(시료채취)일 : 2010. 10. 20, 개선명령 : 2010. 10. 26  
개선명령 이행 보고일 : 2010. 10. 27(개선사항 : 약품량조정 및 침전시간 조정)  
개선명령이행확인채수 : 2010. 10. 28(적합: 배출허용기준이내)  
신고당시 폐수발생량 46m<sup>3</sup>/일, 시료채취일~개선명령 이행 보고일까지 평균 유량 16.57m<sup>3</sup>/일

**【회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3호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물 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으로 신고 당시 폐수배출량인 46m<sup>3</sup>/일을 기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8)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 (2019. 9월)

**【질의】** 일일기준초과 배출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와 일일유량은 산정 관련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당시 채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와 측정된 유량을 토대로 부과를 하고 있지만,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시에는 사업장에서 작성·제출하는 자체 개선계획서 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예상평균 폐수 배출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자체 개선계획서의 개선기간 중에 사업장 지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농도 측정 하고,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을 확인하여 그 기준을 토대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 자진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의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시료채취가 필요할 것이며, 방지사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적산유량계)을 산정하여 수질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9) 확정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산정 (2022. 1월)

**【질의】** 당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부과 사업장임. 관할기관에서는 하반기 확정배출량 제출 후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어 검사배출량에 20% 가산하여 부과금을 산정함. 이 경우 부과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음.

10) 사업장별 부과계수 산정 시 폐수배출량 적용방법 (2003. 11월)

**【질의】** 기본부과금 부과계수 중 사업장별 부과계수에 관한 사항으로 1종 사업장에 있어 규모에 따라 부과계수가 차등 부과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계수 산정기준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필)증상의 폐수배출량으로 적용하여 부과되는지 아니면 확정배출량에 의한 배출량으로 적용되는지?

**【회신】** 기본부과금의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11)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합산여부 (2004. 12월)

**【질의】** 5종 사업장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모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는?① 50만원+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금액, ② 50만원+부유물질 초과금액에서 ①+②인지, ①, ② 중 더 큰 쪽만 부과하는지, 50만원 + 화학적산소요구량 초과금액 + 부유물질 초과금액인지?)

**【회신】**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처리부과금과 종별부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COD와 SS항목이 초과되었다면 각각 항목의 처리 부과금을 합산한 후 사업장의 규모별(종별) 부과금은 한 번만 합산하면 될 것임

※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에 따라 '22.1.1.부터는 COD 대신 TOC를 적용 중

12)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004. 9월)

**【질의】** 아래와 같은 사업장의 초과배출금부과 시 위반횟수는 1회가 되는지 2회가 되는지와 위반횟수가 2회가 된다면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적용은? (4중사업장 : 1.2\*1.2, 5중사업장 : 1.1\*1.1, 직전 위반 부과계수 1.1\*1.2)

※ 당초 5중사업장으로  
 - '04.4.14일 : 개선명령(총질소 기준초과),  
 - '04.4.19일 : 개선명령 이행보고  
 - 시료채취 결과 적합  
 ※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라 5중에서 4중으로 변경 (04.6.4일)  
 - '04.6.24일 : 가동개시신고,  
 - '04.9. 2일 : 개선명령(아연 기준초과)

**【회신】**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역산하므로 제2차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는 1.1×1.2를 적용하면 될 것임

13) 동일항목 재초과 시 중별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여부 (2012. 1월)

**【질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가 수질오염물질 중 A항목이 기준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내 이행완료 보고에 따라 개선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동일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의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시 중별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 여부

**【회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별표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동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시 수질오염물질 중 A항목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동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고,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 후 동일 항목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초과는 동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배출허용기준 초과항목과 개선명령 이행보고시 배출허용기준 초과항목이 동일 항목이라 할지라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적용되고, 중별부과금도 부과하여야 할 것임

14) 배출부과금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 (2013. 8월)

**【질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청정지역이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 기준은 나지역을 적용받을 때, 초과부과금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어느 지역으로 적용받는지?

**【회신】** 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폐수배출시설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구분 (청정, 가, 나, 특례)에 따라 적용됨

15)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산정방법

**【질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의 구체적 산식 문의  
**【회신】** 배출부과금 산출식에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함.

(예시) 2023년도 부과금산정지수 산정

①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 1.0692

$$\frac{(\text{소비자 물가상승률} + \text{생산자 물가상승률})}{2} = \frac{(4.88\% + 8.95\%)}{2} = 6.92\%$$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산출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당해년도 10월 단위로 적용

[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100]

② 2023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 6.4397

$$2024\text{년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6.0229 \times 1.0692 = 6.4397$$

16) 배출부과금 환급여부 (2003. 7월)

- 【질의】** 경기도 ○○군내에 식품가공품을 제조하고 있는 소규모 영리 법인이며, '01.7월경 ○○ 환경감시대에 의해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전제(적발당시에도 공장 생산공정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 상태임)하에 공장 뒷편에 별도로 용기에 모아 두었던 청소수를 수거하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경우로서 '03.5월에 ○○지방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수질 환경보전법(현 물환경보전법)위반 무죄와 관련, ○○군청에 납부한 배출부과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고발에 대하여 법원에서 비록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배출 부과금은 유효한 행위로 인정될 것이므로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환급받기가 어려울 것임.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기관에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3.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 승계 등

1)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책임 관계 (2004. 8월)

- 【질의】** 폐수처리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책임한계는?
- 【회신】** 폐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 등의 책임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있음

2) 경매로 배출시설을 인수할 경우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신고 대상자 (2004. 2월)

- 【질의】** 03.12.24 경매에 의한 경락이 이루어지고 '04.1.20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03년 하반기 수질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을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존업체는 부도나고 없음)
- 【회신】**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는 배출부과금도 포함되므로 2003년 하반기 수질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경락받은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며, '03년 하반기 기본부과금도 납부하여야 할 것임

3) 수질배출부과금 승계 (2010. 12월)

- 【질의】** 1996년도부터 1998년까지 총 9건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 A(주)업체에 대하여 1998년도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04년에 임의경매가 있었으나, 우리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지 못함  
  
2004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은 (주)B업체가 경락을 받았으나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없이 공장가동을 하지 않아 수질초과배출금을 승계하지 않음  
  
2007년도에 (주)B업체는 (주)C업체로 등기부등록상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 A(주) 업체와 (주)C업체는 상호명만 동일[A(주)=(주)C]할 뿐 법인번호가 다른 사업장이며,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임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에 의거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2004년부터 체납액에 대해 5년이 넘게 권리(압류 등)를 행사(재산조회결과 무재산 및 폐수배출시설 미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지켜본 후 수질초과 배출부과금을 승계시켜야 할지?
- 【회신】** 수질배출부과금의 체납관리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결손처분(정리보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할 것임.

4) 배출부과금 승계 (2016. 5월)

- 【질의】** 경매 낙찰자가 인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신규 허가(신고)를 받을 경우 수질배출부과금 승계 가능 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제4의2(전부폐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설 전부폐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업종 변경에 따른 부과금 승계 여부?
- 【회신】** 양도·양수에 의한 변경허가(신고)시 권리의무 승계의 타당함과는 달리 경매절차에 의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여부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매 등에 의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또는 동일 업종으로 조업할 때에는 전 사업자에게 부과한 배출부과금이 승계되나, 동 시설을 폐쇄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와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 사업자에게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승계가 되지 않음.

5) 배출부과금 체납 조치 및 권리의무 승계 (2018. 8월)

**【질의】** 사업주가 건물주로부터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1억원)을 장기간 체납한 상태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자진폐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변경신고 수리 가능 여부?

※ 배출부과금 체납에 따라 재산(땅, 건물, 집, 자동차) 조회한 결과 무재산임. (추적 조사중)

변경신고 수리(자진 폐쇄)가 가능하여 폐쇄신고 수리된 후, 동 폐수배출시설을 제3자가 양도받아 새로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전 허가주가 자진폐쇄하고 체납한 배출부과금이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회신】**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체납된 부과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체납된 부과금이 있는 경우, 부과금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를 취하고, 최종적으로 압류된 배출시설에 대한 공매 등을 추진하여 배출부과금을 회수하는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 체납된 부과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폐쇄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폐쇄 전 압류 및 공매과정을 거쳐 폐수배출시설을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의해 미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6) 임차인이 허가권을 반납한 경우 부과금 처리문제 (2003. 12월)

**【질의】** 임차인이 초과배출부과금의 미납상태에서 폐업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허가권을 반납한 경우 동 부과금의 처리문제와 신규허가 여부는?

**【회신】** 임차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이므로 동사업자의 동의 또는 폐업신고(변경신고) 없이는 제3자가 동 물건(허가대상)에 대하여 기존 소유자와 임대차한 경우라도 변경신고나 새로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할 수 없음. 아울러, 제3자가 변경신고나 새로이 허가(신고)를 득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임차인과 제3자 간에는 미납된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7) 수질배출부과금 납부 등에 관한 의무 주체 (2013. 5월)

**【질의】** 임대인(A), 임차인(B), 전대 임차인(C)저희는 임차인(B)으로 임대인(A)과 전세 계약 후 임대한 공장 내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후 전대 임차인(C)에게 폐수배출시설을 건당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빌려줌. B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후 관할구청에 신고를 득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을 전혀 직접 사용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화공약품 구매나 원료구매를 하지 않았고 사무실만 사용, 어떠한 폐수도 직접 방류한 적이 없음. C가 화공약품 구매나 원료구매, 판매, 영업, 시설가동 등 모든 제조 생산를 하여 폐수 방류를 직접 했음. 이러한 과정 중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회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 납부 등에 대한 의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함.

4. 공동방지사설

1) 공동방지사설 배출부과금 징수 (2011년)

**【질의】**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중 다수의 폐수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방지사설이 있으며, 동 방지사설의 운영자는 수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공동방지사설 운영(법인) 대표자의 납부기피로 체납된 상황임. 공동방지사설 운영대표자의 배출부과금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발생 시 그 공동시설에 귀속된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분납시키고, 체납 시 독촉 및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한지?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담은 공동방지사설의 운영규약에 근거하여 관할기관에서 각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강제 분담시킬 수 있는지?

**【회신】** 공동방지사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개별 배출시설(각 사업자)은 방지사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장별로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한 분담명세를 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동방지사설에 대한 초과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시설별로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이 구분되고, 배출부과금의 납부이행 주체 역시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부과금 분담명세에 따라 체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공동방지지설에서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2018. 5월)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이 수질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지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공동처리사업장 : 6개소(A, B, C, D, E, F) / 공동방지지설 대표자 : A
- 허가증에 신고된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발생 현황
  - A, B, C 사업장 : COD, BOD, SS, T-N, T-P, 색도
  - D, E, F 사업장 : COD, BOD, SS, T-N, T-P, 색도, Zn, Mn
- ※ 배출된 폐수는 모두 공동방지지설로 유입 처리됨

공동방지지설에서 채수한 최종방류수의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Zn, Mn 항목이 기준을 초과 배출된 경우 허가증에 Zn, Mn 항목이 없는 A, B, C 사업장도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회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지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4항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지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음 공동방지지설을 이용하는 개별사업장에서도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은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하여 공동방지지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정한 사업장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임

3) 공동방지지설 체납처분 (2010. 12월)

**【질의】** 공동방지지설 운영대표자의 배출부과금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발생시 그 공동시설에 귀속된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분납시키고 체납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이 가능한지 여부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담은 공동방지지설의 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관할기관에서 각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강제 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방지지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개별 배출시설(각 사업자)은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장별로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한 분담명세를 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동방지지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시설별로 배출부과금 부과 내역이 구분되고, 배출부과금의 납무이행 주체 역시 공동방지지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방지지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부과금 분담명세에 따라 체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제정 1996.12.31 환경부훈령 제 345호
- 개정 2004.12.15 환경부훈령 제 594호
- 개정 2009. 8.18 환경부훈령 제 859호
- 개정 2010. 1. 8 환경부훈령 제 896호
- 개정 2010.12.22 환경부훈령 제 931호
- 개정 2013.12.27 환경부훈령 제1072호
- 개정 2014.12. 3 환경부훈령 제1118호
- 개정 2018. 3.19 환경부훈령 제1310호
- 개정 2023. 2. 2 환경부훈령 제159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란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4.12.15.>**

**제4조(징수의 순위)**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과금
3. 가산금

## 제 2 장 징수 및 독촉

**제5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 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징수권자의 업무)**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과금의 부과 및 부과금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부과금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사항
4. 체납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공매등에 관한 사항
6. 공매담당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8.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배출부과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10. 부과금의 부과, 징수, 독촉, 체납처분, 공매, 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부과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과금(가산금,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는 「물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한다.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 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인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① 징수권자는 제10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부과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통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금)** ①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공매에 따른 징수)** ① 공매에 따라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과금 및 가산금을 공매일로부터 지체없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부과금징수권의 이관)** ①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과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
2.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
3. 검사성적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징수유예등)** ① 징수권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 징수권자는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등)** ① 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장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과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준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제 3 장 환급, 추징 및 징수비용의 교부

**제21조(환급금의 지출방법)**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징수교부금의 사용)**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된 직접비용
  2.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3.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여비 및 수당
  4.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
  5.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6.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7.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자재, 차량 등의 구입
  8. 기타 시·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이내로 한다)
  9. 환경개선사업(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30% 이내에서 사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제 4 장 체 납 처 분

**제23조(체납액의 처리시기)** ① 체납액의 처리시기는 체납액 발생일의 익월중에 하여야 한다.

- ②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징수권자는 분기별로 미납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 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체납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조사
2. 점포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 처분을 중지한다.

**제26조(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 ①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27조(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 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
  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
  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 ② 제1항의 각호의 조사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 ③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제28조(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제29조(압류)** 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부과금의 납부 독촉기간 경과후 1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30조(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 재산의 압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8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매처리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결 손 처 분

**제3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손처분)** ①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과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보 칙

**제34조(문서의 우선 취급과 처리)**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 전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생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문서

**제35조(장부의 기록·유지)**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부과·징수실적 등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확인 실시)**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이상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

1. 부과금대장등 정리사항
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 점검·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부과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부과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제3장 강제징수의 규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한다.

③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91호,2023.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 고 계 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징수금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적 인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 고 계 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 )은행 ( 점)							
납기후금액 (납 기)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년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 고 계 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징수금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기)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징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

직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발행년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 고 계 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가 산 금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납기후금액 (납기)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별지 제2호서식]

수 령 증

제 목 :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통지서  
통 지 서 :  
코드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상기 통지서를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독 축 장

발행번호: 제 호

납부자	성명(납입자번호)	
	상호명(업체)	
	주소	
세입과목	20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납부금액	당초금액 : 가산금 : 증가산금 : 총합계 :	
납부기한	20년 월 일	
지정수납기관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우체국	
<p>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년 월 일</p> <p>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 : (인)</p>		
<p>※ 공지사항 : 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근거법령 :</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납부의무자	①업소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부과일자	⑦부과기간	⑧부과금액	⑨유예신청기간	⑩분납횟수	⑪징수유예금액
			~		
⑫ 분 납 결 정 사 항					
납부년월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년월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하여야 할 금액			
1차			7차		
2차			8차		
3차			9차		
4차			10차		
5차			11차		
6차			12차		
<p>20 . . . 신청한 귀하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년 월 일</p> <p>귀하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 부 자	성 명		
	주 소 또는 거 소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체 명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부과금·채납액의 내용			
부 과 년 월	납 부 기한 (독촉납부기한)	징수유예금액	비 고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취 소 년 월 일			
취 소 의 이 유			
<p>귀하께서 20 . . . 결정통지한 징수유예를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재산과약 및 행방추적 조사서					
귀하 20 . . . . .					
<p>배출부과금 징수상 필요하오니 채납자인 다음 사람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재산상 태를 지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주 소 2. 사 업 장 3. 사업장명(상호)      4. 사업형태      5. 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장 귀하					
<p>배출부과금 채납자의 현주소 및 재산조사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p> <p>1. 현주소(또는 거소) 2. 사 업 장 3. 사업장명(상호)      4. 성 명 5. 재 산 상 황</p>					
구 분	재 목	수 량	시가환산가격	소재지 및 소유자	참고사항
동 산	가재도구	점	원		
	기 타	평	원		가 축
부동산	대 지	평	원		
	전 답	평	원		경 작 인
	건 물	평	원		
기 타	채 권	건	원		채 무 자
회보기관명					년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기관명	구분	일련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종별	업종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오염물질명	납부기한	부과기간	비고
	계													
	초과 부과금	소계												
	기본 부과금	소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1. 총괄표

기관명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계							
		현년도							
		과년도							
	초과	계							
		현년도							
		과년도							
	기본	계							
		현년도							
		과년도							

2. 결손유형별총괄표

기관명	미납사유	초과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① 체납자 무재산								
	② 시효완성								
	③ 폐업, 도산, 경매, 부도 등								
	④ 무재산 행방불명								
	⑤ 압류액<집행비용								
	⑥ 기타								

3. 미수납사유별총괄표

기관명	미납사유	초과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① 폐업,도산,경매 등								
	② 행정소송중								
	③ 분할납부중								
	④ 납기미도래								
	⑤ 경영악화								
	⑥ 기타(납부회피 등)								

4. 부과·징수 등 세부내역

부과 기관명	업체명	소재지	T M S	종 별	부 과 일 자	부과액		수납 일자	수납액		결산 처분 일자	불납결손액		결손유형 구체 적유 형 번호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미수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부과 금	기본 부과 금		초과 부과 금	기본 부과 금		초과 부과 금	기본 부과 금		변 호	구체 적 사유	현재까지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합계																				

※ 결손유형: 결손유형총괄표 ①~⑥까지의 구분에 따라 번호 기입

미수납사유: 미수납사유별총괄표 ①~⑥까지의 구분에 따라 번호 기입

5. 가산금·환급금·감면금 규모

기관명	가산금		환급금		감면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 ] 심사 [ ]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00시 00과장		생년월일
		주소 00시 00구 00로 0000		
신청사항		신청내용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자 토지소유현황 조회		
		활용목적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자(주000)의 재산을 조회 압류하여 강제징수에 활용		
		제출처 00시 00과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자료제공 방법	[ ] 인쇄물 [ ] 전산매체			
자료요구 범위	[ ] 기개발 [ ] 자료제공 [ ] 전국 [ ] 시·도 [ ] 시·군·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00시 00과장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심사 결과 1부(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필지당 각 인쇄물: 30원 전산매체: 2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가증권(예금, 채권 등)

○ ○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

1.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금액 징수·관리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오니 0000. 00. 00(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상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000	000000-0000000 (000-00-00000)	00시 00구 00로-0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회내용 : 0000. 00. 00( ) 기준일자 ㈜000의 거래계좌번호 및 잔액

붙 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2. 법인 금융정보(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폐업사실증명서.  
6. 담당자 공무원증 사본.  
7. 법인등기부등본. 끝.

○ ○ 시 장

수신자			
주무관	사무관	과장	
협조자		점수	
시행			
우			
전화	전송	/	/
			/ 비공개

## 결손처분 보고(양식\_참조)

부과개요

법인 현황

상호(대표자)	업종	소재지	비고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적발일자	부과사유	부과금액	부과일자

체납 및 징수현황

체납금액

징수금액

체납금 발생사유 분석

'00년 기준 (주)000 현 상황

'00년 기준 (주)000 재산조회 결과

토지 :

건물 :

차량 :

유가증권 :

체납금 결손처분 검토결과

향후 조치계획